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



[시행 2022. 4. 20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5호, 2022. 2. 8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정보보호기획과), 044-202-6445, 6449

제1조(목적) 이 운영기준은 「전자서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인정사업자"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말한다.
- 2. "전자서명인증시스템"이란 인정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.
 - 가.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
 - 나.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
 - 다. 인증서를 생성 발급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
 - 라. 기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 및 설비
- 3. "등록대행기관"이란 인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입 신 청을 접수·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가입자등록정보"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인정사업자에게 제출한 신청서,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증명서 등의 사본 그리고 기타 신청에 필요한 전자적 기록 등을 말한다.
- 5. "가입자"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6. "이용자"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**제3조(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)** 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정 기술의 이용) 인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.
 - 1.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서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할 것
 - 2. 가입자의 전자서명은 가입자 본인의 통제 아래에서만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, 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 가입자 이외의 다른 자가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없도록 할 것
 - 3. 서로 다른 전자문서에 사용된 전자서명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, 하나의 전자문서에 사용된 전자서명이 다른 전자문서에 재사용될 수 없도록 할 것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
- 5.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할 것
- 6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단체 또는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할 것
- **제5조(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)** ① 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(이하 "인증업무준칙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, 이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한다.
 - ② 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준칙에 포함하여야 하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인증업무준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.
 - ③ 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,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을 개정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가 변경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④ 인정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관과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 인증업무준칙의 제·개정 시 이에 대해 협의한다.
- 제6조(가입자 등록) ① 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법 시행령 제9조·시행규칙 제5조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한다.
 - 1. 가입자 신원정보의 진위(정확성)를 확인할 수 있을 것
 - 2. 신원정보의 주체(소유자)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
 - ② 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직접 대면(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 포함)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한다.
 - ③ 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를 등록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인증서의 이용범위, 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한다.
 - ④ 인정사업자는 계약에 의해 가입자의 신원 확인 및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기관에 위임하는 경우, 등록대행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수립·유지·관리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·감독한다.
 - ⑤ 인정사업자는 등록대행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전송받는 경우, 가입자의 등록정보가 위조·변조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된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 등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.
- 제7조(인증서 발급·효력정지·효력회복 및 폐지 등) ①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,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.
 - ②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 생성·검증 등 가입자에게 발급된 인증서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.
 - ③ 인정사업자는 자신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위조·변조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.
 - ④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,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 인정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.
- ⑥ 인정사업자는 이용자가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여 인증 업무준칙에 규정한 공고 설비에 공고하거나, 이용자에게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**제8조(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)** ① 인정사업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인증업무준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다.
 - ②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, 관련 표준을 따라야 하고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또는 안전한 암호화 장치를 이용한다.
 - ③ 인정사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, 다자인증 통제(m of N, m은 3명 이상)하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다.
 - ④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,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⑤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,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한다.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다자인증 통제(m of N, m은 2명 이상)하에 활성화한다.
- **제9조(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)** ①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.
 - ②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,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의 통제 아래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마련한다.
 - ③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 등을 방지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를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한다.
 - ④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는 경우,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.
 - ⑤ 인정사업자는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 중 1부를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 시설과는 별도의 원격지 저장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한다.
 - ⑥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거나 복구하는 경우,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한다.
 - ⑦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보호조치를 계획하고 감독·통제하는 관리책임자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보안관리자의 입회 하에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그 원본을 안전하게 파기한다.
 - ⑧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된 경우, 해당 가입자 및 관련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.
- 제10조(시설 및 자료 보호조치 등) ①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해 별표에 따른 보호조치를 수행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인정사업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.
- 제11조(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) ① 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, 제3항,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휴지 · 폐지 절차 및 법 제20조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수한다.
 - ② 인정사업자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연계정보를 이용・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
 - 2. 연계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 조치를 할 것
 - 3. 연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서명과는 분리된 별도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정보를 전송할 것
 - 4. 연계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한 시간 등 로그를 기록・저장할 것
 - 5. 권한 있는 관리자만이 연계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제를 갖출 것
 - 6. 그밖에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을 준수할 것
- 제12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) 인정사업자는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46조제6항에 따른 고시를 준수한다.
- 제13조(재검토기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94호)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2-5호,2022.2.8.>

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